

## 아동과 관련된 가정복지적 욕구를 위한 통합적 Extension Service의 필요성

이 완 정\*(인하대 소비자아동학과 조교수)

아동학 분야에서 ‘가정복지’라는 용어가 제시된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영유아보육법 제 1조를 들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보육사업의 근본 목적은 영유아보육을 통해 가정복지의 증진에 기여<sup>1)</sup>하는 것이었는데, 법 제정 후 10년이 지난 지금 이 목적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평가해 보자. 91년 법 제정 이후 정부는 일반예산 및 국민연금 기금 1조3천억 원을 투입하여 8,900여 개소의 보육시설을 확충한 결과 2000년 3월 말 현재 20,000여 개 보육시설에서 690,000여 명의 아동이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는 바, 이는 90년 법 제정 이전과 비교해 볼 때 보육시설 수로는 10배, 보육아동 수로는 14 배 증가한 수치이다. 하지만 보육사업의 양적 확충이 이루어지는 동안 실제로 영유아기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고자 하는 가정의 복지적 욕구는 별로 충족되지 못한 듯하다. 실제로 작년 말 발족한 보건복지부 산하 보육발전위원회·기획단(2001)의 자체 평가에서도 민간 중심의 보육시설 확충으로 보육문제를 지나치게 시장서비스에 의존하도록 만들었다든지 일반 유아기 아동만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충하여 영아, 장애아, 방과후 아동 등 특수보육에 대한 시설공급이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주변에 보육시설은 많아도 막상 2세 미만의 영아기 자녀를

\* 학회에서 아동학 전공자인 본인에게 김 외숙 교수님의 원고인 “미국 Extension Service에서의 가정관리학 분야의 통합적 실천”에 대해 토론을 의뢰한 취지는 아동학 분야에서 가정복지의 통합적 틀을 갖춘 복지서비스를 모색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토론 원고를 준비하였음.

1) 영유아보육법 제 1조는 다음과 같다. “제 1조(목적) 이 법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1. 1. 14. 법률 제 4328조)

맡길 시설은 마땅히 찾을 수 없다거나 부모가 shift worker인 경우 정규보육시간이외에 이들의 자녀를 돌봐주는 24시간 보육시설이 극히 부족하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현재 보육서비스전달체계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적 보육 서비스전달체계가 가정의 복지적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동안 근래에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원하는 시간에 탁아모가 집으로 와 아이를 돌봐주는 가정방문서비스 형태의 보육사업도 개발되고 있으나 이것은 오히려 아동의 복지뿐 아니라 가정의 복지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sup>2)</sup>이다.

이러한 문제가 야기된 원인 중 하나는 아동의 보육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실시하는데 있어 바탕이 되어야 할 '가정복지'의 올바른 개념이 부재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아동학이 발달하면서 아동 및 아동을 둘러싼 여러 체계의 환경들(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및 거시체계 등. Bronfenbrenner, 1979참조)을 함께 고려하기보다는 아동 개인의 내적 발달과 성장만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아동발달이론에 기초하려는 경향(Sapon-Shevin, 1992)이 이러한 문제를 초래했다고 판단된다. 그 결과 현재 우리 사회의 아동보육 서비스는 아동의 발달과 복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나 가정의 욕구(사회참여, 빈곤 등)와 사회적 필요성(노동력, 평등화, 박탈 등)까지 염두에 두는 방향으로 새롭게 제시되어야 하는 과제(보건복지부, 1998)를 안게되었다.

토론자는 김 외숙 교수님의 원고를 읽고 NEAFCS(The National Extension Association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의 홈페이지에

2) 다음은 한국일보 2001년 3월 19일자 기사를 요약한 것이다. 현재 서울에서 운영중인 탁아모 파견업체는 20여 개. 이들 업체는 6평 이상의 사무실만 갖추면 '직업소개소'로 등록할 수 있다. 업체들은 계약직이나 시간당 5,000원에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에게 면접과 간단한 '정신교육'만으로 가정에 파견해 식사 챙기기, 통화 읽어주기, 공작지도 등 전문적인 육아활동을 맡기고 있다. 정식직원이 아닌 탁아모에 의한 절도나 상해 등 사고발생 시 업체는 '도의적 책임'만 질 뿐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탁아모의 몫이다. 대형 업체의 경우 최대 안전장치가 '어린이 상해보험'과 '어머니 외출 시 귀중품은 안방에'라는 주의사항이 전부이다... 주부 이모(31)씨는 두 살배기 아들을 위해 D업체에서 탁아모를 소개 받았지만 아이 몸에서 수 차례 명 자국을 발견...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지난달에만 10 여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직업소개소의 성격상 노동부 관할"이라 하고, 노동부는 "보육에 관한 문제는 복지부 관할"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더욱이 신설된 여성부 역시 "성희롱 방지나 성차별 문제 해결이 우리 업무"라며 발을 빼고 있다.

들어가 Extension Service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NEAFCS에서 제시하고 있는 5~6개의 교육프로그램 영역 중 아동학 분야와 관련 있는 내용은 특히 「부모교육 부분」<sup>3)</sup>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의 제목들이 아동학 전공자에게 그리 낯설지 않다. 가령 위스콘신 주의 'Home Alone' 프로그램은 방과후 집에서 부모의 관리·감독 없이 혼자 지내야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라 판단되는데, 방과후 혼자 지내는 아동과 부모는 근래 우리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가정복지적 욕구를 가진 인구층으로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토론자가 이들이 '가정복지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즉 현재 우리 나라에서 방과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은 대략 초등학생의  $\frac{1}{4}$  이상이라 추산(여성특별위원회, 2000)되는데,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의 욕구는 자녀들이 먹고, 쉬고, 놀이하는 등의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외에 자녀가 학원 등을 다니며 특기지도 등을 받는 등의 교육적, 인격적 욕구까지 충족시켜주는 서비스를 찾는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공공부문 복지서비스전달체계인 보육시설 및 사회복지관의 방과후 보육 내용<sup>4)</sup>은 주로 전자의 욕구충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곳에 다니는 아동은 극히 적은 반면 대부분의 아동은 사설학원에서 보습교육을 받거나 특기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대다수의 아동이 부모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방과후에 혼자 사설학원을 몇 군데 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와 혼자 지내는 형편인데, 이들이 이 모든 시간동안 어디에서도 '생물학적 욕구'나 '인격적 욕구' 및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가정생활복지의 통합적 서비스(송혜림, 1999)를 충실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이외에도 청소년 문제를 예방 혹은 치유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가정

3) 현재 제시되어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Family Focus Parenting Program(New Hampshire주)', 'Gifts that Last a Lifetime (Pennsylvania주)', 'Home Alone(Wisconsin주)', 'Family Tree Parenting Program(New York주)', 'Growing Old in a New Age(Wyoming주)', 'Grandparents as Parents(Kentucky주)', 'Festival for Families(Georgia주)', 'The Chats with Parents(Florida주)' 등이 있다.

4)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에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조건은 매우 까다로운 편이며, 특히 보육료가 제한되어 있어 원하는 아이들에게 특기교육을 실시하기가 어렵다. 민간 보육시설에서는 추가로 교육료를 받고 방문 교사를 중심으로 아동들에게 특기교육을 시키거나 일부에서는 아동이 원할 경우 일정시간에 근처 학원을 다녀올수 있도록 관리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관련 Extension Service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특히 아동학 및 가족학 분야의 교수들을 중심으로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 교육 프로그램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실시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청소년 문제가 증가하면서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정학 분야의 복지서비스로 정착하지는 못한 감이 있다.

아동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가정복지적 욕구를 고려할 때 현재 NEAFCS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모교육 분야의 여러 가지 Extension Service들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우리나라에서도 크다고 판단되며, 아동학 분야에서 가정복지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통합적 서비스프로그램을 개발, 기획하는데 힘을 합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다만 문제는 가정복지서비스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획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가정복지수요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달체계와 서비스전달에 필요한 재정이 미흡하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미국 NEAFCS와 우리나라 가정복지 현장의 가장 큰 차이점일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복지 서비스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외에도 가정복지서비스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당면 과제라 하겠다.

현재 아동학 분야의 복지 서비스전달체계의 구체적 사례는 ‘어린이집’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가정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한 장(場)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서비스의 내용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한 편이다.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반 이상의 부모가 dual worker이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어 뭔가 배우러 오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린이집을 통해 아동관련 가정복지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막연히 부모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기보다는 지역별 특성과 복지욕구를 파악한 후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복지서비스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시도해 보는 것이 초기단계에서 필요한 일일 것이다. 가령 인하대학교위탁 종달새어린이집에서는 아동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발표하는 날에 육아용품 바자회를 함께 열어 많은 학부모의 호응을 받은 바 있다.

미국 NEAFCS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의 대학교 특히 가정대학을 중심으로 Extension Service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미국처럼 지역 county별로 extension agent나 extension educator를 별도로 배치하는 전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역대학의 관련전공을 중심으로 가정복지서비스프로그램을 기획, 전달하

는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 중요하다. 토론자가 수학했던 미국 유타(Utah)주립대학교의 Extension Service Center<sup>5)</sup>의 주요 사업은 크게 ‘평생교육(Continuing Education)’, ‘회의관련 서비스(Conference Services)’ 및 ‘협동프로그램(Cooperative Extension)’이다. 특히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방송대학과 비슷한 형태의 원격·개방교육을 통한 학위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전달체계가 우리나라의 가정대학을 중심으로 시도될 수 있다. 가령 통합적 가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과후 아동보육사<sup>6)</sup>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원격교육이나 개방교육형태로 운영<sup>7)</sup>할 수 있는데, 이때의 교육내용에는 아동발달 및 교육을 중심으로 한 내용 외에 소비자교육 분야에서 아동의 용돈관리 및 소비생활지도 프로그램, 영양학 분야에서 중기아동기 영양 특성에 따른 식생활 관리 교육 프로그램 등을 반영시킴으로써 방과후 아동 및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일련의 가정복지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아동보육사를 교육,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현재 YWCA에서는 지역별로 가사도우미(파출부)나 출산도우미 등을 교육시켜 필요 가정에 소개시켜주고 이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일반의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앞에서 제시된 ‘시간제 가정방문 탁아모 제도’의 경우 가정복지사특별위원회와 YWCA가 연계하여 이를 양질의 제도로 정착,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2,784명의 가정복지사가 배출되어 있다(가정복지사특별위원회, 2001). YWCA지역별로 가정복지사가 이들 시간제 탁아모 지원자를 교육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를 양질의 제도로 정착시켜 놓으면 시간제 부업을 하려는 대학생들의 잠재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과 관련된 가정복지적 욕구를 위한 통합적 가정생활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내용과 전달체계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앞으로 가정학의 여러 전공간 학제적(multi-disciplinary) 연구와 공동작업을 토대로 통합적 가정복지의 활성화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5) 주소 : <http://extension.usu.edu>

6) 한국아동학회에서는 현재 방과후 아동지도를 위해 아동지도사 양성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7) 사실 이러한 개방교육 형태는 이미 여러 대학교에서 ‘사회교육원’이나 ‘시민대학’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이 있는 학교에서는 가정학관련 분야의 전공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가정복지사 특별위원회(2001). <http://www.homewell.co.kr>.
- 보건복지부(1998). 유아보육프로그램집.
- 보육발전위원회·기획단(2001). <http://childcare.kihasa.re.kr/index1.htm>.
- 송혜림(1999). 가정복지의 개념에 대한 가정학적 관점의 정립. 21세기 가정복지의 지향과 사회적 실천.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대회자료집(pp. 1~45). 한국가정관리학회
- 여성특별위원회(2000). 방과후 아동보육실태분석과 종합대책수립을 위한 연구.
- Bronfenbrenner, U.(1979). *Ecological Theory of Child Development*. Harvard Express.
- Sapon-Shevin, M(1992). *Reconceptualizing the Early Childhood Curriculum: Beginning the Dialogue*. 신옥순·염지숙 역. 유아교육과정의 재개념화. 서울:창지사.